

행정형기관	기업형기관
제주통계사무소	
통계개발원	
항공기상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업대학	
국립산림과학원	
해양경찰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의적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정부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간의 기능 통·폐합으로 농업공학연구소 및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등이 폐지됨에 따라 이들 기관을 책임운영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는 한편, 미래성장 동력, 농가현장 대응 및 소비자 식품 중심의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위주로 조직과 기능을 연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으로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을 재편하여 그 사무 및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8년 10월 8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대통령령 제21075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을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제34조제1항 중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명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제3항 중 “심의회가 제33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되, 차기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를 “1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을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로, “거쳐야”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로 한다.

제34조제8항 중 “제5항”을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으로 한다.

제34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제5항 중 “별표 7”을 “별표 8”로 한다.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대도시 인정 기준) 법 제175조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

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해당 관할 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2년 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말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된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여 전년도 각 분기 말일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아니하면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한다.

별표 5 비고란의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7을 별표 8로 하고,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월정수당 등 비용결정 기한에 대한 특례) 제3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 비용결정 기한은 200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심의회 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을 위촉하였거나 심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 또는 구성된 심의회로 본다.

제5조(기존의 조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2009년 1월 1일부터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이 영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7]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

가. 계산식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월정수당의 자연로그 값 = $6.252 + 0.298 \times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 0.122 \times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의 자연로그 값)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더미변수) 값

- 재정력지수: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지방교부세 및 당초예산 기준의 자치구재정조정교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산정한 지수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민 수
- 더미변수 값: 특별시·광역시·도(0.249) / 50만 이상 시(0.092) / 50만 미만 시(0.031) / 도·농복합시(0.023) / 군(0) / 자치구(0.105)

나. 기준액(단위: 만원/연액)

- 월정수당 자연로그 수치를 실제 값으로 환산한 금액 = EXP (월정수당 자연로그 값). 다만, 환산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천원 단위(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 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당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월정

수당 지급기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하한 범위 이하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인상 기준

-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음 연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한 후, 기존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연도부터 새로운 지급기준을 결정한 연도(새로운 지급기준이 적용되기 바로 전년도를 말한다)까지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유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의 기준을 구의 설치 여부로 정의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나친 인상과 지역 간 편차 발생 등으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고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의 합리적인 기준액과 그 지급범위를 제시하며, 의정비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구 50만 이상 시 기준 재정립(현행 제10조제1항 삭제, 영 제118조 신설)

(1) 종전에는 인구 50만 이상 시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로 정의하였으나, 이를 원래의 법 취지에 맞게 전년도 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 연속 50만 이상인 경우로 명확하게 정의함.

(2)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인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한 특례 적용에 관한 혼란이 방지되어 지방자치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 제시(영 제33조제1항제3호, 영 별표 7 신설)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월정수당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급기준을 결정할 때마다 사회적 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주민수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액과 그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등의

정비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해소되고,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영 제34조)

(1)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보다 객관적으로 구성하여 심의위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필요함.

(2)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교육계,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하며, 심의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공정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함.

(3)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되고, 심의위원 위촉과정의 합리성과 의정비 결정에 대한 심의위원의 책임성이 확보되어 의정비가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8년 10월 8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대통령령 제21076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 제1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및 전라남도부지사로 한다.